

2002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 금호풍암동이 분동되어 기존 현장민원실을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 자치센터 운영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 특히 금호풍암동이 분동되어 2001.8.6자 개청하였으나 8월말 현재 인구가 7만이 넘고 있어 앞으로 금호·풍암동의 재분동에 대비 금호동 지역에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 치 : 서구 금호동 위치 내
- 매입면적 : 660㎡(200평)
- 예상금액 : 500백만원(평당 2,500천원)
- 매입시기 : 2002년
- 매입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취득

3. 검토의견

서구의회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거대동인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을 분동하여 기존의 금호 현장민원실을 금호풍암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1평인 동청사는 장소가 협소하여 대민봉사 행정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전환에 따른 주민문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도입에도 애로점을 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동된 금호풍암동마저 8월말 현재 인구가 7만이 넘고 있어 앞으로 금호·풍암동의 재분동에 대비하여 금호동 지역에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입부지의 위치나 매입면적·매입금액·매입시기·매입방법 등이라 하겠습니다. 동청사의 규모는 현재는 물론 장래의 행정수요의 양과 질 및 주민의 수, 우리 구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 확보된 풍암동 청사부지(202평)와 거의 같습니다. 그밖에 매입금액·시기·방법 등에 있어서도 특이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 1년 동안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이라면 의결을 요구하는 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의안의 입안형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